

심 사 보 고 서

1994. 12. 19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09회 정기회

○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('94. 12. 19) 상정
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김 광 흥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 개정준칙 시달

나. 주요골자

○ 의료원장 임면 : 이사회 추천에 의해 도지사 임면 ⇒ 임명의 경우에만
이사회 추천 (면직의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 불요)

○ 의료원장 신분과 관련한 이사회 소집 : 기획관리실장이 소집

⇒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이 소집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노 재 청)

○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본조례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의 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 골자로는

첫째, 현행 의료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임면토록 되어있는 것을 임명의 경우에만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기만료 또는 자격상실등 임원으로 서 결격사유가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추천이라는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키 위한 것이며

둘째, 의료원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인 기획관리실장이 소집하던 것을, 이사인 예산담당관 또는 보건과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는 이사회의 실무적인 심사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문답변요지 : 없 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가결 (참석 : 7명, 찬성 : 7명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
설치조례증 개정조례(안)